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1-59
----------	---------

발의연월일 : 2021년 5월 25일

발 의 자 : 황영호, 이의걸, 김현희, 김용원
정정희, 김성한, 이종숙, 김동협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사회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외국인 치안봉사대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외국인 치안봉사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제명)
- 나. 용어 정의, 조직 구성 및 임무에 외국인치안봉사대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2조 ~ 안 제4조)
- 다. 활동범위, 경비지원 등 규정(안 제5조 ~ 안 제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 나. 협조부서: 자치행정과
- 다. 입법예고: 2021. 5. 27. ~ 6. 1.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 외국인치안봉사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율방범대”를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란 각 동에서 방법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법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외국인 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국인 치안봉사대”(이하 “치안봉사대”라 한다)란 지역사회 질서유지 및 방법활동에 관심이 많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고 한다) 체류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방법 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치안봉사대는 구 관내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한다.

④ 치안봉사대는 대장·부대장·총무 및 대원(이하 “치안봉사대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자율방범대는 제1항”을 “자율방범대와 치안봉사대는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② 치안봉사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 홍보·순찰
2.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관련 경찰 치안업무 및 구 행사 협조·지원
4. 그 밖에 외국인과 구민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5조 중 “관할구역으로”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치안봉사대의 활동범위는 구 관내로”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7호 중 “자율방범대”를 각각 “자율방범대 및 치안봉사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율방범대원 수와”를 “자율방범대원 수 및 치안봉사대원 수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을 “자율방범대 및 치안봉사대에 대한 예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을 “활동실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율방범대원”을 “자율방범대원 및 치안봉사대원”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을 “예산지원”으로 한다.

제9조 중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을 “자율방범대원 및 치안봉사대원에 대하여 임무활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치안봉사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치안봉사대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법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자 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법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 시 강서구 <u>자율방법대</u>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u>자율방법대</u>”(이하 “<u>자율방법대</u>” 라 한다)란 각 동에서 방법의식 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 으로 구성되어 방법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법대 · 외국인치안봉사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 <u>자율방법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u>-----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 범대”(이하 “<u>자율방법대</u>”라 한다)란 각 동에서 방법의식 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 민으로 구성되어 방법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p> <p>2. “<u>외국인 등</u>”이란 「<u>재한외국 인 처우 기본법</u>」 제2조제1호 의 <u>재한외국인</u>과 「<u>다문화가</u></p>

죽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
하는 가족을 말한다.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국인
치안봉사대”(이하 “치안봉사
대”라 한다)란 지역사회 의 질
서유지 및 방법활동에 관심이
많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고 한다) 체류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방법 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 ①·② (생략)

<신 설>

<신 설>

제4조(임무) ① (생략)

<신 설>

제3조(조직 및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치안봉사대는 구 관내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한다.

④ 치안봉사대는 대장·부대장
·총무 및 대원(이하 “치안봉사
대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
으로 구성한다.

제4조(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치안봉사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예
방 홍보·순찰

2.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관련

② 자율방범대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활동범위) 각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행정동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제6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 6. (생략)

7.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원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경찰 치안업무 및 구 행사 협조·지원

4. 그 밖에 외국인과 구민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③ 자율방범대와 치안봉사대는 제1항과 제2항-----

제5조(활동범위) ----- 관할 구역으로 하고, 치안봉사대의 활동범위는 구 관내로 ---.

제6조(경비 지원 등) ① ----- 자율방범대 및 치안봉사대-----

1. ~ 6. (현행과 같음)

7. ----- 자율방범대 및 치안봉사대-----

② ----- 자율방범대원수 및 치안봉사대원수와 -----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3. (생략)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교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
----- 자율방범대 및 치안봉사대에 대한 예산
-----.

1. ----- 활동실적-----

2. 3. (현행과 같음)

4. ----- 자율방범대원 및 치안봉사대원-----
----- 예산지원-----

제9조(교육) -----
----- 자율방범대원 및 치안봉사대원에 대하여 임무활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치안봉사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치안봉사대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한 것으로 본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4., 2015. 12. 1.>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